

#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있어서 LIMAC의 역할과 제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제언

### 이력관리제도 소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심사 통과 후,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 지연·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는 자치단체 재정운용 차질 및 손실 발생으로 연결됨
- 이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엄격한 사전평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가 부족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함
- 한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업 준공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잦은 사업담당자 교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의 제2항(2015.12.24.)을 개정하였으며, 2016년부터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이후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 이력관리 사업정보와 2019년도 대상사업 현황

이력관리 사업정보 : 투자심사 통과사업의 사업계획에 주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명, 투자심사 통과 시기, 심사 통과 조건, 연차별 투입계획, 공종별 사업비, 일정계획 등으로 구성됨

- 사업정보는 하나의 투자심사 통과사업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생성 및 수집되며, 사업준비단계(투자심사 통과 기준)⇒추진단계(투자심사 통과 후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기준)⇒완료단계(사업 준공 기준)로 이루어 짐

2013년 이후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력관리 대상사업<sup>1)</sup>은 1,470건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90.6조원에 달함

#### ■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

합계	소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총사업수(건)	1,470	1,236	130	220	234	283	369	234
총사업비(조원)	90.6	77.6	10.6	20.3	20.7	12.7	13.3	13.0
건당 사업비(억원)	616.3	627.9	810.0	924.0	886.5	449.7	359.8	555.0

주 : 1)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 중 행사, 연구개발, 기업지원 사업 등 이력관리 실효성이 없는 사업 제외  
 2) 자체심사 통과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포함

1)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과 중앙의뢰심사 사업을 이력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력관리 제도에 있어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역할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수행 절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정보 DB구축', '사업 검토를 통한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중점관리사업의 관리'로 구성됨

이때, LIMAC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꾸준히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및 심층점검 연구」, 201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 연구」, 2018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투자사업 이력관리 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2019

### ■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수행 절차 ■

구분		절차	수행주체
이력 관리	사업정보 DB구축단계	• 준비단계 사업정보 입력 요청	행안부(LIMAC)→지자체→ 행안부(LIMAC)
		• 추진단계 사업정보 입력양식 제출	
	사업 검토 단계	• 자가진단 결과 제출	지자체→행안부(LIMAC)
		• 이력관리 사업 총괄 현황 제출	
		• 종합검토	행안부(LIMAC)
		•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행안부(LIMAC)→지자체
		•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	지자체→행안부(LIMAC)
		• 전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행안부(LIMAC)
		사업 관리 단계	• 중점관리사업 선정
	• 자체관리계획 수립		지자체
	•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확정		행안부(LIMAC)
	•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 공개		행안부

##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첫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등) ①항의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와 ②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행체계 구체화 방안 필요

- 심사규칙과 매뉴얼 간 상호연계성 부족에 따른 전면 재수정 필요
  - 2항(투자사업 이력관리)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고, 수행체계를 구체화한 내용을 반영한 매뉴얼이 필요함



둘째, 사후관리(운영)단계는 ‘타 부처 실태조사 및 점검 등과의 중복성 문제’, ‘투자심사단계 계획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문제’, ‘사업의 효과 및 성과 측정의 실현가능성 문제’, ‘복합사업’의 경우 추진단계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공사 시에는 시설별로 진행하며 운영 주체 또한 다양함에 따른 정보 수집의 한계’ 등이 존재함

- 이에 사후관리(운영)단계는 이력관리 업무에서 제외하되, 투자심사 시의 계획에 준하여 사업준공까지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이력관리 범위를 재설정함



셋째, 이력관리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매년 연속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존에 설정된 사업정보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신규추가·세분화·간소화·삭제·유지 등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 현행 심사규칙 및 매뉴얼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분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성
- 투자심사 통과 이후 과정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
- 매뉴얼 상, 자체평가 및 중점관리사업 선정 가능하도록 구성
- ‘사업준비단계-사업추진단계’, ‘사업준비단계-준공단계’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구성
- 기술적으로 DB 설계 및 구축 가능하도록 구성

넷째, 사업추진단계의 사업정보 입력시기 및 기준시점 미제시로 업무 수행 시 혼란을 야기하며, 사업별 기준시점의 일관성 결여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추진단계의 주요 사업내용은 전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하며, 입력양식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DB를 구축함

구분		현행	변경
사업정보 DB 구축	사업추진단계	• 지자체 사업부서가 e-호조사시스템에 직접 입력	• 행안부 양식 배포 ⇒ 지자체가 연간 집행액 기준으로 추진단계 입력후 제출 ⇒ LIMAC 오류 검토 ⇒ 최종DB 구축
		• 분기별 입력	• 연1회 입력
	사후관리단계	• 사업정보 기준시점 부재	• 전년도 말 기준
	사후관리단계	• 반기별 입력	• 제외

**다섯째, 투자심사 이후, 사업 추진 간 내용 변경 및 중단된 경우에 대한 관리기준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된 사업내용으로 추진을 하거나, 중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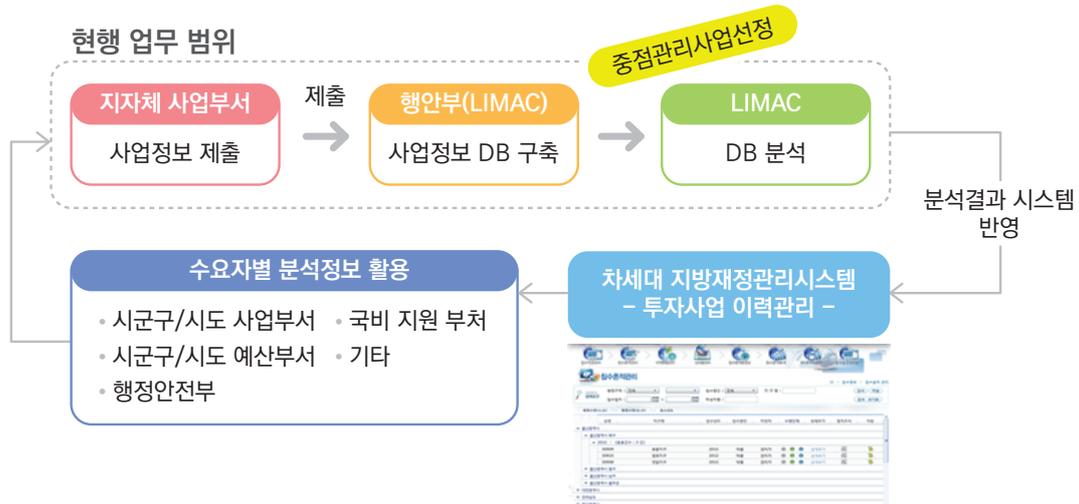
- 투자심사 통과 이후 사업 추진 과정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이력관리 업무 수행 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림 1-1]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수행 절차 중, '자체관리계획 수립' 업무를 통해 당초 투자심사 대비 사업추진 중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과 중단 사업(재심사 대상 포함)에 대한 '취소'를 공식적인 절차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재정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구분		현행	변경
사업 관리	중지	관리 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수행하는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내용 변경 및 사업 중지 승인 신청 절차 마련 제안</li> <li>- 자체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된 사업 확인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li> <li>- 행안부는 이를 검토하여 자체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력관리</li> </ul>
	내용변경		

**여섯째, 현재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는 심사가 통과된 투자사업의 당초 계획(투자심사 통과 시의 사업 내용) 대비 총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사업들을 평가하여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는 행정안전부의 관점에서 지자체 사업을 투자심사 통과 이후에도 관여 및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는 오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부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업정보 DB의 분석 성과를 지자체 등에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 효율화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

**이력관리 제도 완성을 위한 정보제공 업무 반영의 개념도**



▶ 내용문의 : 여규동(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2-3488-7398, yeokd@krila.re.kr)

지난호 보기 : 지자체 공무원 근로자를 위한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순화정 부연구위원)

[원문보기](#)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mailto: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